육제품
일본으로의 반입 금지
肉製品の日本への持ち込み禁止

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
2020년7월 1 일부터

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한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00만엔 이하의 벌금
(법인의 경우 최고5,000만엔)이
부과됩니다.

家畜伝染病予防法改正により
2020 年 7 月 1 日から

違法に畜産物を持ち込んだ場合は、
3 年以下の懲役又は
最高 300 万円の罰金
（法人の場合は最高 5,000 万円）
が科せられます。

AQS

일본국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
日本国 農林水産省 動物検疫所